

의안번호	2207560
의 퇴 인	안상훈 의원
회 답 일	2025. 2. 13.
추 계 번호	25C6462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7조(급여의 종류)	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초과 120% 이하인 사람에게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15조(자활급여), 제15조의3(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), 제16조(지역자활센터 등)	자활급여의 내용에 “자활에 필요한 상담 및 사례 관리”를 포함하고, 자활복지개발원과 지역자활센터가 각각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(급여의 종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5조(자활급여), 제15조의3(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), 제16조(지역자활센터 등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자활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, 자활급여의 내용에 상담 및 사례관리를 포함할 경우, 자활급여비 및 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, 자활급여 특례자·일반수급자·급여특례가구원·차상위자·시설수급자는 희망하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

- 조건부수급자: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 - 일반수급자: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, 의료·주거·교육 급여수급(권)자 중 참여 희망자
 - 자활급여 특례자: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,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(고용노동부)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%를 초과하는 경우
 - 급여특례가구원: 의료급여특례,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
 - 차상위자: 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 - 일반수급자·시설수급자: 시설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고(60개소로 출발), 2024년 말 기준 125명의 자활사례관리사를 고용하였으며,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 지역자활센터에 개소당 1인의 자활사례관리사 배치 계획(총 250명)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확대될 대상자 수와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례관리사 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현재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120% 이하인 사람의 수에 대한 자료 부재
 -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이 되므로, 현재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정보를 보건복지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음
 - 개정안 시행 시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의 확대 여부 및 그 규모를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개정안에 따른 자활급여의 추가 대상자 수를 알 수 없으므로, 대상자 확대에 따른 사례관리사 수 역시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움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